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 준 업**

<차례> _____

I. 문제의 제기	IV. 개선방안
II.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제도	V. 결 론
III. 문제점	

주제어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자살보험금 사건, 보험신용정보, 휴면보험금, 보험약관

<국문초록>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는 민법과 상법을 기초로 한다. 우리 민법과 상법의 규정은 지난 6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에 있어서 변화된 보험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법률과 현실 간의 괴리로 인한 문제점이 자살보험금 사건을 계기로 주목을 받으면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수의 법안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민법상의 소멸시효 제도 전반을 고치지 않는 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만 개선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기존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보험소비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ICT 기술의 발달로 쉽게 보험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에 대한 청구가 늘어나고 있어 분쟁이 잦아지고 보험소비자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로는 외국의 입법례와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만들어진 2013년 법무부 민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험약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개정안은 객관적 체계에서 주관적 체계로 전환하면서 단기소멸시효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 현행 법체계에서 이를 약관에 반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보험약관의 해석이 쟁점인 사건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때 동일 약관을 사용하는 모든 사건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약관 소급명령 요건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약관 소급명령을 남용할 경우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자살보험금 사건, 즉시연금 사건과 같이

* 본 논문은 2021년 4월 23일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 한국보험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 신협중앙회 보상서비스팀장, 법학박사(Ph.D), 손해사정사.

- 논문접수일(2021.05.25), 심사개시일(2021.06.10), 게재확정일(2021.06.22)

소멸시효 제도의 문제점이 두드러지는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면 소멸시효 제도의 불합리성을 보완할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보험약관을 개정하고, 사고보험금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전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한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I. 문제의 제기

2014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이후 7년이 지났다. 그동안 잘못 작성된 자살면책제한 조항의 해석이 쟁점이 된 자살보험금 사건¹⁾의 처리 과정에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여론의 관심을 받으면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개선에 대한 법안이 다수 발의되기도 하였다.²⁾ 그러나 소멸시효 제도를 전

1)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2) 당시 제출된 법안은 다음과 같다(백영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개선 법안 검토” 『KiRi리포트』 제417권, 보험연구원, 2017, 12면).

번호	의안 명	제안 일자	주요 내용
200833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박용진 의원 등 12인)	2016. 7. 12.	보험계약자 측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추가
2001017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주승용 의원 등 12인)	2016. 7. 21.	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한 경우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추가
2004888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정재호 의원 등 10인)	2016. 12. 30.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2005111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김해영 의원 등 13인)	2017. 1. 16.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의 설명의무, 설명확인절차 미이행 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
2005406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민병두 의원 등 10인)	2017. 2. 2.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보험계약자 측이 청구권이 발생했음을 안 때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알 수 있었던 때로 규정

반적으로 개편하지 않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제도만 개선할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큰 변화 없이 기존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들의 소멸시효에 대한 인식에는 큰 변화가 있어서 실무상에서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로 인한 다툼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약관의 해석상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자살보험금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법원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³⁾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였다.⁴⁾ 자살보험금 사건 이전에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으나, 그 이후에는 보험수익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⁵⁾

; 2020년에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유주선, “보험계약법상 최근 쟁점 - 2020년 의원 입법(안)을 중심으로 -”, 「일감법학」제48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308~312면).

번호	의안 명	제안 일자	주요 내용
2100568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박용진 의원 등 10인)	2020. 6. 16.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확정적 회신을 받을 때까지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함.

- 3)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 4) 소멸시효 경과 전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불법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자살보험금 사건의 발단이 된 ING 생명보험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법원은 ①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것은 그 항변권을 행사하여 보험금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등 사인 간의 거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라면, 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과 제재의 목적으로 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다르며, ② ING 생명보험의 보험업법 제127조의3 위반행위는 보험수익자로부터 보험금청구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거부한 당시에 발생한 것이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를 근거로 하여 처분을 한 것이므로 현재도 ING 생명보험에게 보험금 지급채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처분한 것이 아니며, ③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ING 생명보험이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5. 11. 13. 선고 2014구합71993 판결). 이에 대해 ING 생명보험이 항소하였으나 2016. 6. 22. 항소 취하하여 종결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70456).
- 5) 실무에서는 소멸시효 완성건의 청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금융감독원은 정기적으로 금융민원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서는 민원유형을 보험모집,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면책·부채 결정, 계약의 성립 및 해지, 고지 및 통지외무 위반의 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어 소멸시효 관련 분쟁의 증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9년도 금융 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 민원분쟁조사실(2020. 4. 20.), 3면;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0년 1~3분기 금융

2016년에 출범한 한국신용정보원⁶⁾은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공제사 및 우체국의 보험계약보험금 지급 등 보험신용정보를 집중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집중된 정보를 이용하여 보험신용정보 조회서비스, 내보험다보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일반인도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과 일부 지급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⁷⁾ 이러한 정보의 확인과정에서 과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보장내용을 몰라서 청구하지 못한 사건들에 대한 보험금청구가 증가한 것도 청구권 소멸시효 경과건 분쟁 증가의 원인 중 하나이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기간 내에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보험수익자의 과실이라고 주장한다면 보험수익자는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역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였다는 주장을 하게 될 것이므로 설명의무 위반문제와 관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법제하에서는 보험약관 해석에 관한 분쟁에 대해 법원이 최종적인 판결을 내린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동일 약관조항의 해석에 관한 문제가 쟁점인 사건이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잘못된 약관해석에 의한 보험금 지급 여부의 결정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라 확정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자살 보험금 사건, 즉시연금 사건 등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예금이나 적립금의 경우에는 청구권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휴면예금, 휴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⁸⁾ 그런데 저축성보험상품 중에는 사고보험금과 적립금을 합산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 사고보험금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경과로 면책하고 적립금 부분은 지급하는 것이 법률상으로는 타당하나 일반인에게는 이러한 처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기 어렵다.

민원 동향, 민원분쟁조사실(2020. 12. 10.), 5면).

- 6)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 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은 기관이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 7) 한국신용정보원은 집중되는 보험신용정보를 보험회사 및 공제기관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인도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 보험신용정보 조회, 실손의료보험 조회, 보험신용정보 제공내역 열람 등 보험신용정보조회서비스와 계약 현황, 정액형 보장 계약 내용, 실손형 보장 계약 내용, 실손형 보장 지급내용 등 내보험다보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www.kcredit.or.kr/work/insuSchlnsu.do (2021. 2. 26. 방문)).
- 8) 휴면예금이란 금융회사의 예금 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말한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020년 개정 전의 생명보험약관들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이하 “KCD”라 한다)가 개정되는 경우 추가되는 질병·재해를 담보 범위에 포함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그런데 이 약관들은 KCD의 적용시점을 규정하지도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 이후 KCD가 개정되는 경우 재판단 여부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발생 시점의 KCD 상으로는 담보 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사고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경과 후에 개정된 KCD 상으로는 담보 범위에 포함되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의 타당성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은 고지의무위반의 제척기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⁹⁾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보다 짧게 설정하게 되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경과 시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제척기간 경과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고지의무 제도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거나 시효중단 사유를 추가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소멸시효 제도 전반과 연관되는 문제이므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만을 분리하여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시효기간의 연장이나 중단 사유의 추가 이외에도 앞서 언급한 쟁점들로 인한 문제가 실무상에서는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동안의 개선 움직임에 대해 살펴본 후, 각 쟁점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9) 상법 제651조에서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지권 행사 기간 경과 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경과 전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해지권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 (박은경,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 연구”, 『금융법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 2018, 159면).

II.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제도

1.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제도 개요

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 관계에 합치하는지를 묻지 않고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법률상 일정한 효과가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이며,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¹⁰⁾ 소멸시효는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촉진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¹¹⁾

상법은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하여(제662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기산점, 중단 및 정지 등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보험금 청구권은 채권의 일종이므로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¹²⁾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제166조 제1항),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된다(제168조)고 규정하고 있고 제179조 ~ 제182조에서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등 시효정지 사유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청구 등에 의해 중단되고 민법상의 시효정지 사유가 있을 때 정지된다. 이하에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10) 박윤직, 「민법주해」 제Ⅲ권, 박영사, 1992, 386면.

11) 권영준,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연구보고서」 제2017-13호, 보험연구원, 2017, 80면; 시효 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내지는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적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이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판결).

12) 권영준, 앞의 보고서(주 11), 11면.

2.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민법 제166조)하는데, 권리 행사 가능 여부는 권리행사에 대한 장애를 법률상의 장애와 사실상의 장애로 나누고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기간이 진행하지 않으나 사실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¹³⁾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정 사건의 발생이라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정해지는 객관적 체계에 의할 수도 있고, 권리자의 인식이라는 주관적 체계에 의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객관적 체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⁴⁾ 우리나라는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해 객관적 체계를 취하고 있으나,¹⁵⁾ 주관적 체계를 취하는 외국의 입법례도 있다. 독일은 일반소멸시효에 있어서 30년의 장기 시효기간을 적용하던 객관적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나 2002년 민법 개정 시 3년의 단기 시효¹⁶⁾를 적용하는 주관적 체계¹⁷⁾를 취하게 되었다.¹⁸⁾ 유럽계약법원칙도 일반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13) 박윤직·김재형, 「민법총칙」(제9판), 박영사, 2013, 429면; 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1984. 12. 26. 선고 84누572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1992. 3. 31. 선고 91다 32053 판결.

14) 홍성균,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객관적 체계의 완화 - 대법원 판례의 ‘객관적 인식 가능성’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제25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8, 1365~1367면.

15) 우리 민법도 전적으로 객관적 체계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제766조)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주관적 체계)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객관적 체계)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여 주관적 체계를 원칙으로 하고 객관적 체계에 의해 보완하고 있다.

16) 독일민법전 제195조 [일반소멸시효기간] 에서는 일반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ürgerliches Gesetzbuch, 이하 “BGB”라 한다. §195 [Regelmäßige Verjährungsfrist] Die regelmäßige Verjährungsfrist beträgt drei Jahre; 양창수, 「독일민법전」(2018년판), 박영사, 2018, 85면); 독일 보험계약법(Gesetz über den Versicherungsvertrag, 이하 “VVG”라고 한다)은 독자적인 소멸시효 규정은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전 VVG에서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청구권은 2년, 생명보험은 5년의 시효기간을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민법의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통일적으로 적용된다(유주선,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시효기간의 정지 - 독일 보험계약법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제21권 제4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1, 7면).

17) 독일민법전 제199조 [일반소멸시효기간의 기산 및 최장소멸시효기간] (1) 일반소멸시효기간은 소멸시효의 개시가 달리 정하여지지 아니한 한 다음의 연도가 끝나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1. 청구권이 성립하고, 또한 2. 채권자가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사정 및 채무자의 신원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알았어야 하였던 연도(BGB §199 [Beginn der regelmäßigen Verjährungsfrist und Verjährungshöchstfristen] (1) Die regelmäßige Verjährungsfrist beginnt, soweit nicht ein anderer Verjährungsbeginn bestimmt ist, mit dem Schluss des Jahres, in dem 1. der Anspruch entstanden ist und 2. der Gläubiger von den den Anspruch begründenden Umständen und der Person des Schuldners Kenntnis erlangt oder ohne grobe Fahrlässigkeit erlangen müsste; 양창수, 앞의 책주

하되,¹⁹⁾ 채무자의 신원 및 권리를 발생시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경우에는 시효가 정지²⁰⁾되도록 함으로써 주관적 체계를 취하고 있다.²¹⁾

법률상의 장애는 이행기가 정해진 채권에 있어서 이행기의 미도래, 정지조건부 권리에 있어서 정지조건 미성취 등 권리 자체에 내재하는 권리행사의 법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²²⁾ 사실상의 장애는 권리의 존재나 권리의 행사 가능성을 모르거나, 이를 알았으나 질병·해외 체류 등의 사정으로 인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거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였거나, 채무자를 찾을 수 없는 등 권리 행사에 법적 제약이 있지는 않으나 사실상의 제약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²³⁾ 판례는 법률상 장애·사실상 장애 이분론을 취하고 있으나, 민법 제166조 제1항은 궁극적으로는 권리행사의 객관적 기대가능성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정하는 조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실상 장애로 분류되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법률상 장애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예외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²⁴⁾

특히 법원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²⁵⁾ 그러나 이 사건들은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하는 국가

16), 86면).

18) 권영준, 「소멸시효와 신의칙」, 『재산법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2009, 15면.

19) PECL 14:201 (General Period) The general period of prescription is three years.

20) PECL 14:301 (Suspension in Case of Ignorance) The running of the period of prescription is suspended as long as the creditor does not know of, and could not reasonably know of:

(a) the identity of the debtor; or

(b) the facts giving rise to the claim including, in the case of a right to damages, the type of damage.

21) 권영준, 앞의 논문(주 18), 15면.

22) 권영준, 앞의 보고서(주 11), 19면; 부산지방법원 2000. 1. 13. 선고 99나10773판결(대법원 2000. 3. 13. 선고 2000다8809 판결의 원심판결).

23) 권리자가 과실 없이 그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 법의 부지 또는 법적 문제에 대한 평가의 잘못도 사실상의 장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종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여서 이를 믿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판례가 변경된 경우에도 시효기간은 판례 변경 시점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진행된다(권영준, 앞의 보고서(주 11), 19면).

24) 권영준, 앞의 보고서(주 11), 20~22면.

25)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액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액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액 청구권

기관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경우이므로 단순히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을 주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수 없다.²⁶⁾ 따라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 보아야 하며²⁷⁾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도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알기 어려운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²⁸⁾

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액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26) 권영준, 앞의 보고서(주 11), 34~46면.

27) 보험사고의 기산점에 대하여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는 보험사고 발생시설, ②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을 안 때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는 보험사고 인식설, ③ 보험금 지급의 유예기간이 경과 한 다음 날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는 유예기간 경과시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판례는 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경우, 권리행사에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책임보험의 경우 채무가 확정되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경우, 보험자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사고 발생시설에 따르고 있다(한기정, 「보험법」(제2판), 박영사, 2018, 329~337면); VVG 제14 조 제1항은“보험자의 급부이행은 보험사고와 보험자의 이행 범위의 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가 종료됨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VVG §14 (1) Geldleistungen des Versicherers sind fällig mit der Beendigung der zur Feststellung des Versicherungsfalles und des Umfangs der Leistung des Versicherers notwendigen Erhebungen.)고 규정하고 있다(이필규최병규 김은경, 「2009년 독일 보험계약법(VVG)」, 세창출판사, 2009, 17면). 독일 대법원은 이를 보험사고의 확정과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액의 범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정찬형, “최근 한국 상법(보험 편)의 개정내용에 관한 연구”, 「금융법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 2017, 96면). VVG는 우리나라의 유예기간 경과시설과 같은 입장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견해를 취하는 학자 중에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사실상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하며, 보험금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금청구권의 유무 및 청구할 보험금액을 알지 못하여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효기간이 개시되지 않고 이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시효기간이 개시된다고 본다(정찬형, 앞의 논문(주 27), 95~96면).

28) 단기소멸시효에 대해 그 기산점을 지나치게 객관화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Boissonade 초안이나 일본 舊 민법은 보통 소멸시효기간 보다 단기로 정한 일부 권리에 대해서는 ‘contra non valentem 법안’을 고려하여 그 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개별규정을 두었으므로, 단기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일반 소멸시효에 비해 완화된 기준으로 기산점을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서중희, “단기소멸시효와 진행 개시 장애 사유 - Boissonade 민법 초안 및 일본 舊 민법으로부터의 시사 -”, 「일감법학」 제46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200~201면).

3.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간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이며,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20년(동조 제2항)이고 일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상법 제64조)이다. 이외에도 민법, 상법, 특별법에서 3년, 2년, 1년, 6개월 등 다양한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이유는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은 통상적으로 소액이며 일상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채권이고, 영수증이 교부되지 않거나 오랫동안 보관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단기간에 결재되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기 때문이다.²⁹⁾ 단기소멸시효 제도는 소멸시효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일반 채권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결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거래내역이 전자적인 형태로 보관되므로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성도 줄어들고 있으며,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위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³⁰⁾ 각국의 입법례³¹⁾에서도 단기소멸시효를 폐지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2013년 민법 개정안에서는 단기소멸시효를 삭제하고 일반소멸시효로 일원화하였고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³²⁾

보험금 청구권은 상법(제662조)에 의해 3년³³⁾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일

29) 권영준, “2013년 민법 개정 시안 해설(민법총칙-물권편)”,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제46호, 법무부, 2013, 241면.

30) 권영준, 앞의 보고서(주 29), 241~244면.

31) 일본은 채권법 개정 시 민법의 단기소멸시효규정을 폐지하였고, 독일민법은 일반 소멸시효 기간 개정 시 복잡한 시효체계를 일반소멸시효로 통합하였으며, 프랑스민법에서도 중기소멸시효 및 단기소멸시효 규정을 2008년 개정 후 삭제하거나 일반 소멸시효 기간에 흡수시켰다(권영준, 앞의 보고서(주 29), 243면); 단기소멸시효의 특례를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복잡한 소멸시효체계로 인하여 법적 혼란과 분쟁이 발생하므로 소멸시효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단기소멸시효를 폐지하고 있다(장덕조, 「보험법」(제5판), 법문사, 2020, 160~161면).

32) 권영준, 앞의 보고서(주 11), 31면; 2013년 민법 개정안과 같이 소멸시효와 관련한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박은경, 앞의 논문, 161면).

33)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2015. 3. 12. 시행)되면서 3년으로 연장되었다. 이는 2007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피해자의 보험금청구권 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권영준, 앞의 보고서(주 11), 47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위탁보험사에 피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상해담보특약에 의해 보호를 받는 자는 개정 전 상법에서는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었다.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자를 자동차

반 당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보다 단기로 규정한 이유는 보험금의 신속한 결제를 통하여 보험자의 재산상태의 명료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³⁴⁾

4.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를 통틀어 소멸시효의 장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진행하였던 소멸시효 기간은 진행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되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하나, 소멸시효가 정지되면 일단 진행한 기간은 그대로 유효하고 정지 사유가 존재하는 일정 기간 내에서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³⁵⁾ 민법(제186조)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외의 특별법들도 특유한 시효중단 사유를 두고 있다.³⁶⁾ 민법은 소멸시효 정지 사유로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제179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제180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제181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제182조)의 4개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청구에는 최고가 포함되는데, 최고는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보험금 지급을 최고 받은 보험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은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효중단의 기산점은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³⁷⁾

손해배상보장법상 피해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할 이유가 없으므로 시효를 3년으로 연장한 것은 타당한 개정이었다(이훈중, “보험금청구권과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4집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14, 15면).

34) 한기정, 앞의 책(주 27), 328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단기로 정한 것은 보험사업의 정상적인 업무 운용을 위하여는 보험금의 신속한 결제를 통하여 보험업자의 재산상태의 명료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47094 판결).

35) 박윤직, 앞의 책(주 10), 485면.

36) 권영준, 앞의 보고서(주 11), 27~28면.

37) 박세민, 「보험법」(제5판), 박영사, 2019, 271~272면;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35620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9467 판결; 대법원은 시효중단제도의 기산점은 그 취지에 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특유한 시효정지 사유로는 금융분쟁조정 신청³⁸⁾이 있다. 금융분쟁조정신청은 금융감독원장이 합의 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 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할 때를 제외하고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보험금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소비자분쟁조정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3).

III. 문제점

1. 자살보험금 사건의 잘못된 처리로 인한 인식변화

자살보험금 사건이란 자살면책제한조항의 해석에 대한 다툼이 쟁점이 된 사건으로 법원은 잘못된 약관대로 자살에 대해서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시³⁹⁾하였으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자에

추어 볼 때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계속적 최고'라는 법리를 창안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최고를 한 뒤 의무자가 자신의 의무이행 준비와 범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예를 구하면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므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한 뒤 회신을 받을 때까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권영준, 앞의 보고서(주 11), 52면).

38)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여된 것은 박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용진의원 등 10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10783, 2017. 12. 12. 제안)에 의한 것이었다. 이 개정안에 의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가 신설되었다. 동 조에서는 금융분쟁조정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며 중단된 시효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는 2021. 3. 25. 부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대체되었다.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한 입법례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환경분쟁조정법 제3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47조, 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6이 있다.

39)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사안에서, 이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

게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고 판시⁴⁰⁾하였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처리하였다. 보험회사들이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였으나, 결국 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⁴¹⁾

실무상에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으나, 자살보험금 사건 이후에는 이에 대해 항의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법률에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명문 규정이 있고 대법원도 소멸시효 완성 전에 대해서는

터 2년이 경과 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약관 해석에 관한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40)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 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되는 바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에 의한 법 원칙을 들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중요한 법 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으로서,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41)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보험회사에게 지시하였다. 보험업계는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미완성 건과 이후 청구 분은 지급하되,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에 대해서는 자살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는 사건의 대법원 판결 이후에 지급하겠다고 대응하였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 완성 건까지 전액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 2016년 6월~11월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 완성 건을 미지급한 7개 보험사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일부 보험사들은 소멸시효 완성 건 지급을 결정하였다.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에서 대법원은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대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소멸시효 완성 건에 대해서도 자살보험금 지급을 지속하여 지시하였다. 2016. 11. 28.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 완성 건을 미지급한 3개 보험사에 대한 징계예고를 통보하였고 2017. 2. 23. 과 2017. 3. 16.에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수준을 결정하고 금융위원회에도 건의하였다(양승규, “재해사망보험의 자살약관과 금융감독원의 책임”, 『보험법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보험법학회, 2018, 18면).

지급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를 감독기관에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자살보험금 사건이 진행 중일 때는 많은 관심을 받았었고 그 영향으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고 법안도 다수 발의되었다. 그런데 관련 법안들은 우리 민법의 소멸시효체계에서는 수용되기 어려운 안이었기 때문에 폐기되었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제도는 자살보험금 사건 당시와 크게 달라진 바 없다. 그러나 당시의 언론 보도로 인해 많은 사람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영향이 현재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건에 대한 이의제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 보험정보 집중 및 활용에 따른 변화

자신의 보험계약이 몇 건인지 담보되는 보험사고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物 보험 분야에서는 보험 가입이 강제되기도 하고, 기업이 계약자로서 보험계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도 하지만, 人 보험의 경우 보험담보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계약하는 사례가 드물며, 우리나라의 人 보험 상품의 담보 내역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ICT 기술⁴²⁾의 발달에 따라 빅데이터⁴³⁾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인도 자신의 보험계약을 쉽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반인도 보험계약 현황, 보장내용, 실손형 상품의 지급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인들이 자신의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사고에 대해 청구를 하지 못한 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사례가 많이 발견되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

42)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과 통신기술(Communication Technology, CT)의 합성어로 정보기기의 하드웨어 및 이러한 기기의 운영 및 정보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이들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 보존, 전달, 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의미한다.

43) 빅데이터(Big Data)란 과거 아날로그 환경에서 생성되던 데이터에 비하여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주기도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영상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한다(<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691554&cid=42171&categoryId=42183>, 2021. 3. 17. 방문); 보험산업에서 빅데이터는 보험 가입 현황이나 질병 발생 빈도, 노후준비 수준 등 다양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글로벌 핀테크 10대 트렌드 및 시사점”, 핀테크혁신실(2019. 6. 7.), 별첨 14면).

효가 완성되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계약자 측에서는 보장내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청구하지 못하였다고 항의를 하게 된다. 즉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 된다.⁴⁴⁾ 실무상 상품설명서에 보장 내역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계약자가 자필서명을 하였다면 설명을 들은 것으로 처리되겠으나,⁴⁵⁾ 보험계약의 현실에서 볼 때 실제로는 계약자가 담보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었고, 보장내역에 대한 설명은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 하였기 때문에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보험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오래전 만들어진 보험금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 제도가 현재 소비자의 인식에는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3. 보험약관 해석 분쟁에 대한 일률적 처리방안 부재

현행 법제하에서는 보험약관 해석 분쟁에 대해서 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에도 그 효력은 당해 사건에 국한되어 적용된다. 그러므로 동일 약관조항 해석이 쟁점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 이전에 소송을 제기

44) 법령을 반복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약관조항에 대해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ignorantia juris non excusat(법을 모른다고 하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로마법의 법언을 따른 것으로서, 법이란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 아래 스스로 알아야 하므로 법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약관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한기정, 앞의 책(주 27), 154~155면);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45)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주계약 및 특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보험금은 중요 사항(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2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보험업법 제95조의2 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상에서는 통상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을 받고 있다. 보험업법과 보험업법시행령의 해당 조항은 2021. 3. 25.부터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로 대체되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는 내용, 보험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위험보장의 범위 등에 대하여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 않으면, 법원이 해당 약관조항의 해석상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자살보험금 사건의 경우에는 자살면책제한조항의 해석이 쟁점이 된 사건이었고,⁴⁶⁾ 즉시연금 사건의 경우에는 연금계산방법에 관한 약관조항의 해석이 쟁점이 된 사건이다.⁴⁷⁾ 자살보험금 사건에서는 법원이 자살면책제한조항의 해석상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판결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례가 많았었고 금융감독원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했다. 즉시연금 사건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타당한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된다.⁴⁸⁾ 보험소비자가 소송비용의 부담 없이 시효중단의 효과를 누릴 수는 있겠지만, 금융감독원이 이미 분쟁조정결정을 내린 바 있음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조정결정을 보류하고 분쟁조정신청에 부여된 시효중단의 효과만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다.⁴⁹⁾ 이러한 불합리한 사태를 막으려면 법적으로 보험약관 해석에 대한 법원

46) 자살보험금 사건에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문제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권영준, 앞의 보고서(주 11); 김원규,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와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법학회, 2018; 박은경, 앞의 논문(주 32); 백영화, 앞의 보고서(주 2); 윤성승·김성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 「비교사법」 제25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8; 이경재, “자살보험금 청구권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30권 제2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장덕조,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금융법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금융법학회, 2016.

47) 즉시연금 사건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은경,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법적 쟁점”, 「상사판례연구」 제32집 제2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19; 박세민, “산출방법서 내용의 약한 편입 여부와 설명의무에 관하여 -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관한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 「보험학회지」 제119집, 한국보험학회, 2019; 장경환, “만기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액 계산에서 만기보험금 총당액의 차감에 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 「보험법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보험법학회, 2018; 장덕조, “즉시연금 사건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금융법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금융법학회, 2018.

48) 즉시연금 사건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조정사건에 대해서 진행을 하지 않는 편법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막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http://www.fss.or.kr/main/cons_safe/pension/request.jsp(2021. 4. 12. 방문)).

49) 금융분쟁조정신청의 시효중단 효력은 원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다. 동 법에 의하면 분쟁조정 신청은 취하되거나 각하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제1항). 그런데 2021. 3. 2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금융분쟁조정 위원회에 관한 규정들은 삭제되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합의 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요건이 분쟁조정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서 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

의 최종판결이 동일 약관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휴면보험금과의 구분 문제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모두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제662조). 그런데 휴면보험금은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된 후에도 지급하고 있으므로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저축성보험상품 중에는 사고보험금과 적립금을 합산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있는데, 사고보험금은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면책하고 적립금만 지급할 경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대법원은 예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를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예금에 대해서는 청구권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⁵⁰⁾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적립금에 대하여도 이자가 지급되는 한, 예금과 마찬가지로 이자 지급 시에 채무의 승인이 있다고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사고보험금의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청구하면 보험자가 보험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결정한다. 따라서 청구 이전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시효중단 사유가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지 않은 경우로 변경된 것처럼 보이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2항의 해석상 소송제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하 내지 기각처리되지 않는 분쟁신청 건은 모두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 50)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이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에 의하여 권리를 잃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행위이므로 명시적 승인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승인도 가능하며,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사회관념 상 상대방이 승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을 때 발생하는데,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경과 전의 예금에 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 정기적으로 이자를 그 예금계좌에 예금이자 명목으로 입금한 행위는 채무자가 예금주 예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어서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자가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주는 영업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잔액조회를 함으로써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처분권도 취득하게 되므로 그로 인한 채무승인의 통지는 그 시점에 예금주에게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그 예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2996 판결); 이 판결은 예금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이자의 지급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으로 본 것이므로 보험상품의 적립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결론에 이를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적립금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적립 내역을 서면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므로 계약자 측에서 이를 채무의 승인으로 주장할 경우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고보험금과 적립금을 합산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⁵¹⁾에는 보험금이 청구되기 전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게 될 것이므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고보험금과 적립금을 합산한 보험금 전부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권을 잃게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적립금에 대해서는 보험사고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은 보험사고가 없었을 때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5. KCD 개정 시 추가조항의 처리 문제

생명보험 약관의 질병·재해분류표에는 KCD가 개정되는 경우 추가되는 질병·재해를 담보 범위에 포함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 조항은 2020년에 와서야 금융감독원의 변경 권고⁵²⁾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표1> 변경 권고 상의 약관예시

개정 전 약관	개정 후 약관
<p>제○조(암의 진단확정) ① 이 약관상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악성신생물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p> <p>별표(악성신생물분류표)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X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20△△. 1. 1. 시행) 중 아래의 질병을 말합니다.</p>	<p>제○조(암의 진단확정) (좌동)</p> <p>별표(악성신생물분류표)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X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20△△. 1. 1. 시행) 중 아래의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악성신생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p>

51) 일시납 10년 만기 저축보험 상품에서 1억 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 당시 적립금에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더하여 지급한다고 가정해 보자. 피보험자가 사망했는데도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3년이 지나면, 사망보험금 1억원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을 수 없지만, 적립금 부분까지 청구권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다. 사망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후 보험금청구 시 사망보험금은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적립금 부분은 계약자가 원하면 해약 처리하거나, 만기 시까지 유지하다가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2) 금융감독원, “보험 상품 변경 권고”, 보험상품감리2팀-10(2020. 1. 21.). 암보험약관을 예시자료로 사용했으나 KCD 변경 시 추가담보조항은 암보험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재해분류표에 공통으로 사용되었다.

개정 전 약관				개정 후 약관			
대상악성 신생물	분류번호	대상악성 신생물	분류번호	대상악성 신생물	분류번호	대상악성 신생물	분류번호
1. 입술구강	C00-C14	1. 입술구강	C00-C14
2. 소화기	C5-C26	22.백혈병	D47.5	2. 소화기	C5-C26	22.백혈병	D47.5

주)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 제(X+1)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악성신생물)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개정 약관에서는 진단 당시 KCD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으므로 진단 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문제가 없다. 그런데 개정 전 약관에서는 진단 시 KCD를 기준으로 하는지, 계약 시 KCD를 기준으로 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이후 KCD가 개정되면 해당 질병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진단 시 KCD에 의해 보험금을 받은 이후에 KCD가 변경되었는데, 변경 KCD에 의한 보험금이 진단 시에 비해 증가한 경우에는 추가로 보험금을 더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본다.

<표 2> 보험금 청구사례⁵³⁾

[사례]
 피보험자는 ‘직장 카르시노이드 종양(불확실한 악성 잠재성)’으로 2013. 9. 9. 당시 6차 KCD의 분류기준에 따라 경계성 종양(D37.5)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10. 30. 경계성 종양 보험금을 받았다. 피보험자는 유암종 사건 판결⁵⁴⁾에 관한 언론 보도를 보고, 2016. 1. 1. 7차 KCD의 분류기준 개정 이후에는 해당 종양이 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2019. 3. 19. 암보험금을 청구하였다.

53) 이는 신협중앙회 보상서비스팀에 청구된 사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개요만 제시하였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공제를 ‘보험’으로 기술하였는데, 실무상 유사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김준엽·맹수석, “암보험금의 지급과 약관해석의 쟁점 - 유암종의 암해당 여부에 대한 작성자불이익원칙의 적용을 중심으로.”, 『보험법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보험법학회, 2020, 98면).

사례의 경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 되었다는 이유로 면책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통상적으로는 최초 진단 시점인 2013. 9. 9.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보험 약관 해석에 관한 판결⁵⁵⁾이 선고된 2018. 7. 24.에 ‘불확실한 악성 잠재성의 카르시노이드 종양이 암보험금 지급대상이 된 것이므로 판결 선고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향후 KCD는 계속 변경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생각건대, 약관이 새로 규정되는 질병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례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⁵⁶⁾

6.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과의 관계

상법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51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3년의 제척기간은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인 3년(제662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지의무위반의 제척기간을 현행대로 3년으로 둔 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만 3년 이상으로 연장하게 되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척기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자로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게 되어 고지의무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의 제척기간을 보험금

54) 유암종 사건은 유암종이 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툰 사건이다. 대법원은 병리학자 대부분이 유암종을 경계성종양으로 분류하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직장 유암종의 크기, 침윤, 분화도 등의 정보를 구분하여 질병 분류번호를 수록하고 있지 않으므로 암으로 분류할 수도 있어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암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판결).

55) 보험사고 또는 보험금 지급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험약관이 규정하는 ‘암은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조항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상제 불명의 직장 유암종은 KCD 상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

56) 이 견해들은 실제로 국내에서 대립하고 있는 학설을 기재한 것은 아니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주장들이 있을 수 있음을 가정하여 기술한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최초 진단 시점인 2013. 9. 9.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약관의 문리적 해석에 치중하여 자살에 대해서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해석하는 현재 법원의 기준으로 볼 때, KCD 적용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KCD 변경 시 추가되는 질병을 포함하겠다는 약관 규정은 그 불명확성으로 인해 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에 비해 길게 설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⁵⁷⁾인데 비해,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의 제척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설정되어 있고,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악의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으로 설정되어 있다.⁵⁸⁾ 舊 일본보험법에서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⁵⁹⁾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의 제척기간은 5년으로 설정되어 있었다.⁶⁰⁾ 그러므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의 연

- 57) 舊 VVG에서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은 2년,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5년으로 규정(舊 VVG 제12조 제1항)하고 있었다. 그런데 민법의 전형적인 소멸시효 제도 보다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2007년 VVG 개정 시 소멸시효 기간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은 전적으로 BGB 제195조(주 16)에 의하게 되었다(이필규·최병규·김은경, 앞의 책(주 27), 136~137면); Three years from end of the year in which the claim arose and the policyholder (should have) obtained knowledge of the underlying circumstances, 보험금청구권 발생 후로서 보험금청구권의 존재를 안 때가 속하는 연도 말로부터 3년([http://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8-518-2251?_lrTS=20170816051628912&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bhpc=1](http://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8-518-2251?_lrTS=20170816051628912&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bhpc=1), 2021. 3. 23 방문).
- 58) VVG §19 Anzeigepflicht(고지의무) (2) Verletzt der Versicherungsnehmer seine Anzeigepflicht nach Absatz 1, kann der Versicherer vom Vertrag zurücktreten(보험계약자가 제1항에 따른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1 Ausübung der Rechte des Versicherers(보험자의 권리행사) (3) Die Rechte des Versicherers nach § 19 Abs. 2 bis 4 erlöschen nach Ablauf von fünf Jahren nach Vertragsschluss; dies gilt nicht für Versicherungsfälle, die vor Ablauf dieser Frist eingetreten sind. Hat der Versicherungsnehmer die Anzeigepflicht vorsätzlich oder arglistig verletzt, beläuft sich die Frist auf zehn Jahre(제19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험자의 권리는 계약 체결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고의 또는 악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10년으로 된다).
- 59) 舊 일본보험법 제95조 제1항 保險給付を請求する權利、保險料の返還を請求する權利及び第六十三條又は第九十二條に規定する保險料積立金の拂戻しを請求する權利は、三年間行わないときは、時効によって消滅する。보험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및 제63조 또는 제92조에 규정하는 보험료적립금의 환부를 청구하는 권리는 3년간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오현수, 「일본 상법·보험법·어음법·수표법」, 진원사, 2013, 275면); Three years. Policy conditions that aim to reduce this time limit are void, 3년, 계약으로 단축할 수 없음(앞의 <http://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주 57)); 현재 일본 보험법에는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일본은 2017년 6월 2일 채권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단기소멸시효 및 상사소멸시효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민법 제166조 제1항의 채권의 소멸시효로 일원화하였다. 따라서 현재 일본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규정이 준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유주선, 앞의 논문(주2), 309~310면).
- 60) 일본보험법 제28조 제1항 保險者は、保險契約者又は被保險者が、告知事項について、故意又は重大な過失により事實の告知をせず、又は不實の告知をしたときは、損害保險契約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사항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실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손해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8조 제4항 第一項の規定による解除權は、保險者が同項の規定による解除の原因があることを知った時から一箇月間行使しないとときは、消滅する。損害保險契約の締結の時から五年を経過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은 보험자가 동항의 규정에

장을 검토할 때는 반드시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의 연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IV. 개선방안

1. 2013년 민법 개정안을 약관에 반영하는 방안

우리 민법은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가족법을 중심으로 개정이 이루어졌고 재산법 분야는 크게 바뀌지 않아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법 현실을 규율하는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⁶¹⁾ 소멸시효 제도 또한 객관적 체계를 취하면서 다양한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어 오늘날의 법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다.⁶²⁾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객관주의를 취하면서 장기간의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하던 체계에서 점차 주관주의를 취하면서 소멸시효 기간을 단기화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으며 복잡한 단기 소멸시효 제도는 폐기하고 소멸시효 기간을 단순화하는 경향이다.⁶³⁾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2013년 법무부 민법 개정안에서는 주관주의를 취하면서 단기 소멸시효 기간을 폐지하였다.⁶⁴⁾ 2013년 민법 개정안은 사회의 변화에 맞게

의한 해제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안 때로부터 1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손해 보험계약의 체결 시로부터 5년을 경과 한때도 같다. 제55조 제1항 保險者は、保險契約者又は被 保險者が、告知事項について、故意又は重大な過失により事實の告知をせず、又は不實の告知をしたときは、生命保險契約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사항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실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의 고지를 한때에는 생명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5조 제4항 第一項の規定による解除權は、保險者が同項の規定による解除の原因があることを知った時から一箇月間行使しないときは、消滅する。生命保險契約の締結の時から五年を経過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은 보험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안 때로부터 1개월간 행사하지 아니 한때에는 소멸한다. 생명보험계약의 체결 시로부터 5년을 경과 한때에도 같다(오현수, 앞의 책(주 59), 216~238면).

61) 김재형,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민법 개정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법무부, 2015, 6면.

62) 법제도가 사회현실의 발전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 소멸시효 제도 만의 문제는 아닌데,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에도 민법 제정 이후 거의 1세기에 달하는 기간 동안 민법이 근본적·전면적으로 개정되지는 않았다(권영준, “특별법의 민법 편입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법무부, 2012, 7면).

63) 권영준, 앞의 보고서(주 11), 25면.

소멸시효 제도를 변경하려고 외국의 입법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학계의 오랜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다.⁶⁵⁾ 비록 임기만료로 인해 민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지만 앞으로 소멸시효 제도가 바뀌어야 할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소멸시효 제도가 변경된다면 2013년 민법 개정안과 유사한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보험약관에 개정안과 같이 변경된 시효 제도를 반영한다면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고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현행 법제도 하에서 보험약관에 2013년 법무부 민법 개정 시안의 소멸시효 제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2013년 개정안에서는 주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현행 민법은 객관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민법 체계의 변경 없이 보험약관에서만 주관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⁶⁶⁾ 그리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경감 할 수는 있으나 배제, 연장, 가중할 수는 없으므로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⁶⁷⁾

현행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제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낡은 제도이므로 보험소비자의 기대를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현상은 ICT 기술의 발달에 따른 보험 신용정보의 활용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더욱 많은 보험소비자의 불만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 예상된다. 그렇지만 일부 보험소비자의 의견에 치중하여 자살보험금 사건과 같이 법원의 판결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법적인 장치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기관에 의한 자의적인 처리가 반복된다면 더욱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보험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고 세계적인 추세에 뒤처지지 않도록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민법의 전반적인 소멸시효 제도 개선과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학계가 함께 소멸시효 제도 전반의 개선을 위해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64) 권영준, 앞의 보고서(주 29), 225면.

65) 김재형, 앞의 보고서(주 61), 6~12면.

66) 현행 민법에서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일부 주관주의 체계를 따르고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제도에 대해서도 유사한 체계를 취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67) 2013년 법무부 민법 개정 시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소멸시효의 가중변경의 경우에도 당사자 간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도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으나 논의 결과 현행 민법의 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권영준, 앞의 보고서(주 29), 331면).

2. 보험약관 해석 분쟁 시 약관 소급명령

보험약관의 해석이 쟁점인 동일 유형의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제도화하여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⁶⁸⁾ 약관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같은 약관을 사용하는 동일 유형의 사건에 적용할 방법이 없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상 같은 취지의 사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겠지만, 일반 소비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약관이 잘못되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를 동일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에 약관해석에 대한 다른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서 청구 당시 그러한 판결이 있었다면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었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자살보험금 사건에서 일반사망보험금을 받고 재해사망보험금은 받지 못했는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⁶⁹⁾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내려진 경우나 유암종에 대해서 경계성종양 보험금을 받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암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⁷⁰⁾이 내려진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더 지급하려고 해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문제, 지연이자 문제가 있으므로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자살보험금 사건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강행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보험회사에 지급을 강제하다 보니 많은 논란이 발생하였다.⁷¹⁾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약관해석이 쟁점인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로 약관해석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동일 유형의 약관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보험약관의 해석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약관해석이 쟁점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적인 결정에 따라서 약관을 일

68) “2. 보험약관 해석 분쟁시 약관 소급명령” 부분은 김준엽, “인보험약관의 해석원칙과 보험자의 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2021, 290~296면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69)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70)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71) 양승규, 앞의 논문(주 41), 15~19면; 이경재, 앞의 논문(주 46), 397면; 황현아,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행정제재의 법적 근거와 한계 - 재해사망보험금 및 즉시연금 사건에 대한 행정제재의 타당성 -”, 「금융법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금융법학회, 2018, 129~136면.

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약관 소급명령 제도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약관의 해석에 대한 소송은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직접 소송을 진행 중인 사건은 시효가 중단되지만, 동일 약관을 사용하는 사건들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한 대법원 판결 선고 전에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많다. 약관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동일 유형의 모든 약관에 적용되어야 할 때 금융위원회가 약관 소급명령을 내리고 약관 소급명령이 내려진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규정하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이 없더라도 시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⁷²⁾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약관의 해석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어서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를 결정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한 금융위원회의 약관 소급명령 개시 시점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현행 보험업법상 약관 소급명령의 요건에 “불명확한 기초서류의 내용에 대해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를 추가한다면 현행 법제 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개정안에 대하여는 구체적 정의실현을 위하여 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점에 봉착할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의 포괄적 명령권 활용은 극히 신중하여야 하며, 기존상태 존중주의와 관련하여 소급적용도 신중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리고 행정청인 금융위원회가 선택한 특정 사안에 대하여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지게 행정작용을 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고 계약관계를 유동적으로 만들게 되어 소멸시효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기초서류 변경명령제도만 잘 활용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보호에 충분하다는 비판도 있다. 비판의 취지에 공감하며 금융위원회의 소급명령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가능한 현행 기초서류 변경명령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자살

72)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이나 소멸시효 기산점의 조정은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계약체결 시 외에 보험금 지급단계에서도 부과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 견해에서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소멸시효 연장논의에서 중요한 반론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보험사고의 발생 사실이나 보험금청구권의 존재를 모르는 수익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김원규, 앞의 논문(주 46), 276~285면). 이러한 점에서 약관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이 있기 전에는 사실상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공통적인 약관해석 문제에 관해서는 기산점을 조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보험금 사건, 즉시연금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와 같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금융감독원이 무리한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개정안과 같은 법적 장치를 갖추고 제한적으로라도 불합리함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약관의 해석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해당 약관에 기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판결 이후부터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이후 금융위원회가 약관 소급명령을 내린 때로부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하면 편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사법부의 최종판결을 반영한 기초서류 변경 명령으로 인하여 변경된 기초서류가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그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때로부터 기산 한다.”는 내용을 현행 보험업법의 규정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표3> 보험업법 개정 제안

현행	개정 제안
<p>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p> <p>① <생략></p> <p>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보험회사의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기초서류의 변경 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장래에 향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p>	<p>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p> <p>① <생략></p> <p>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보험회사의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거나 건전한 보험제도의 취지를 벗어나는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불명확한 기초서류의 내용에 대해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기초서류의 변경 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p>

현행	개정 제안
<p>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변경명령을 받은 기초서류 때문에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주거나 보험금을 증액하도록 할 수 있다.</p> <p>⑤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p>	<p>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장래에 향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으며 사법부의 최종판결을 반영한 기초서류 변경명령으로 인하여 변경된 기초서류가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그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때로부터 기산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3.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보험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약관 개정

현재 휴면보험금⁷³⁾에 대해서는 휴면보험금 찾아 주기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각종 시스템⁷⁴⁾을 통해 휴면보험금을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런데, 휴면보험금의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소비자는 휴면보험금과 사고보험금을 명확히 구분하지도 못한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제도는 상법상의 제도라는 이유로 약관에서 이를 상세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지도 않다.⁷⁵⁾ 보험소비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제도에 대해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표준약관의 소멸시효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73)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보험계약 중에서 해지(실효) 또는 만기 도래 후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2년 또는 3년)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보험금을 말한다(정의하고 있다(fine.fss.or.kr/main/prc/is/sub/is006.jsp, 2021. 3. 15. 방문).

74) “내 보험 찾아줌(<http://cont.insure.or.kr>)”은 가입한 모든 생명보험·손해보험 상품의 가입내역과 아직 청구하지 않고 남아 있는 보험금 내역을 365일 24시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이다. 만기 후 3년이 지난 보험을 제외하고 현재 유지 중인 보험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금청구의 소멸시효가 지나 휴면이 된 보험금은 휴면보험금 항목으로 조회된다.

75) ICT 기술을 활용하면 현재 개발된 시스템만으로도 보험소비자가 질병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경과 전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 (주 7) 서비스와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에서 제공하고 있는 진료 및 투약정보(<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TreatmentInjectionInformationPerson.do>, 2021. 3. 24. 방문)를 결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한국신용정보원과 국민건강보험에서 현재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한다면 청구 가능한 질병 보험금을 보험소비자가 쉽게 조회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4>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제안

현행 ⁷⁶⁾	개정 제안
<p>제37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 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p>	<p>제37조(소멸시효) ①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 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p> <p>② 제1항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청구권자의 주관적 인식 여부는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p> <p>③ <u>보험계약 해지(실효) 또는 만기 도래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보험금을 휴면보험금이라고 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청구가 있으면 지급합니다.</u></p> <p>④ <u>보험사고 발생 시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사고 보험금의 경우에는 사고발생 후 3년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u></p>

권리행사에 대한 장애에 관한 법률상 장애·사실상 장애 이분론은 학계에서는 통설이지만 보험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담보하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보험회사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보험수익자라는 사실을 몰라서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⁷⁷⁾ 분쟁을 줄이고 보험소비자가 소멸시효 기간 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

76)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생명보험 표준약관(2020. 10. 16. 일부 개정, 2021. 4. 1. 시행)에서 발췌함.

77) 금융위원회에서는 청약과정에서 보험모집인이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보험신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적용배제 부작용 걱정”, 2021년 2월 8일 자). 설명의무위반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017. 1. 16. 김해영 의원 등 13인이 의안 번호 2005111, 상법 개정안(주 2)을 제안하였다가 폐기된 바 있다. 설명의무 위반과 소멸시효 적용을 연계하는 예는 우리 법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며,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촉진하고 법적 안정

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사실상의 장애가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약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실무에서는 사고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과 보험료, 해지환급금, 책임준비금은 지급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자 지급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으로 보기 때문에,⁷⁸⁾ 보험수익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 이자가 가산되는 경우에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면 채무의 승인이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지만, 이 경우 휴면보험금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사고보험금의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가 없으면 지급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아 이자도 지급될 수 없으므로 사고 발생 시부터 3년이 경과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보험약관에 사고보험금의 경우에는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주기적으로 안내한다면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4.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권 제척기간과의 관계를 약관에 규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은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권의 제척기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만약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게 된다면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권의 제척기간을 그 이상으로 연장해야 할 것인가. 현행 상법에서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과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권의 제척기간을 같은 기간인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3년 민법 개정 시안과 같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면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권의 제척기간도 5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고지의무위반 제도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ICT 기술의 발달에 따라 보험자의 고지사항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고지의무의 형태도 보험계약자의 자발적·적극적 의무에서 보험자

성을 추구하는 소멸시효 제도의 속성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권영준, 앞의 보고서(주 11), 80~81면). 소멸시효와 설명의무 위반은 별개의 문제로서 양자를 결부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78)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2996 판결(주 50).

가 제시하는 질문포에 기재하는 수동적 고지의무 방식으로 변경되고 있고 고지 의무의 수동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⁷⁹⁾ 이러한 상황에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의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해지의 제척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보험소비자를 보호할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준약관에서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와 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1년이 지났을 때는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⁸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표준약관의 이 조항에서 정한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실무상으로는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고조사가 증가하는 등 지급절차가 강화되어 보험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V. 결론

현행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기산점, 중단 및 정지 등 상세한 규정은 민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제정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재산법 분야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법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우리 상법은 제정 시에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2년으로 규정하였다가⁸¹⁾ 2014년 개정 시⁸²⁾에 3년으로 연장하였으나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 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제도에 대한 법률의 규정은 지난 60년간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 자살보험금 사건을 계기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고 이에 따라 많은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민법의 소멸시효 제도 전

79) 맹수석, “인슈어테크와 보험법적 쟁점”, 『보험법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보험법학회, 2020, 13면.

80)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생명보험 표준약관(2020. 10. 16. 일부개정, 2021. 4. 1. 시행) 제14조 제1항 제2호.

81) 법률 제1000호로 1962. 1. 20. 제정, 1963. 1. 1. 시행되었으며, 제662조에서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였다.

82) 법률 제12397호, 2014. 3. 11. 개정, 2015. 3. 12. 시행.

반을 고치지 않는 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제도만 개선할 방법은 없으므로 변화 없이 기존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해 보험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자살 보험금 사건에서 금융감독원이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면서 보험소비자의 소멸시효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에 대한 청구가 늘어나면서 분쟁이 잦아지고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보험약관의 해석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후에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하면서 현행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보험약관에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제도에 대해서는 상법의 규정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 상세한 규정이 없어 보험소비자들은 사고보험금과 휴면보험금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소멸시효 완성 전에 사고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다. 2013년 법무부 민법 개정 시안은 민법학계의 5년간의 노력이 집대성된 것으로 외국의 입법례와 환경 변화를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소멸시효 제도를 제안한 것으로 이에 따라 민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으나 소멸시효 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큰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보험약관에서 2013년 민법 개정 시안 상 제안된 소멸시효 제도를 반영할 방법이 없을지 검토하였다. 그러나 시안은 객관적 체계에서 주관적 체계로 전환하면서 단기 소멸시효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 현행 법체계하에서 이를 약관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보험약관의 해석이 쟁점인 사건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때 동일 약관을 사용하는 모든 사건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약관 소급명령 요건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약관 소급명령이 무분별하게 남용된다면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서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훼손하게 되겠지만,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된다면 소멸시효 제도의 불합리성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보험약관에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완하고 사고보험금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 안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보험소비자에게 안내한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곽윤직, 「민법주해」 제Ⅲ권, 박영사, 1992.
-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제9판), 박영사, 2013.
- 김은경,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 2016.
- 박세민, 「보험법」(제5판), 박영사, 2019.
- 양승규, 「보험법」(제5판), 삼지원, 2004.
- 양창수, 「독일 민법전」(2018년 판), 박영사, 2018.
- 오현수, 「통번역을 통해 쉽게 읽는 일본 상법·보험법·어음법·수표법」, 진원사, 2013.
-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제9판), 박영사, 2015.
- 이필규·최병규·김은경, 「2009년 독일 보험계약법(VVG)」, 세창출판사, 2009.
- 장덕조, 「보험법」(제5판), 법문사, 2020.
- 최기원, 「보험법」(제3판), 박영사, 2002.
- 한기정, 「보험법」(제2판), 박영사, 2018.
- 한창희, 「보험법」(개정4판),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9.
- 권영준, “소멸시효와 신의칙”, 「재산법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2009.
- _____, “특별법의 민법 편입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법무부, 2012.
- _____, “2013년 민법 개정 시안 해설(민법총칙·물권 편)”,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제46호, 법무부, 2013.
- _____, “자살과 채해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보험약관의 해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14876 판결의 평석 -”, 「재산법연구」 제32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15.
- _____,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연구보고서」 제2017-13호, 보험연구원, 2017.
- 김원규,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와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법학회, 2018.

- 김은경,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법적 쟁점”, 「상사판례연구」 제32집 제2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19.
- 김재형,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민법 개정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법무부, 2015.
- 김준엽, 맹수석, “암보험금의 지급과 약관해석의 쟁점 - 유암종의 암해당 여부에 대한 작성자 불이익원칙의 적용을 중심으로 -”, 「보험법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보험법학회, 2020.
- 김준엽, “인보험약관의 해석원칙과 보험자의 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2021.
- 맹수석, “보험약관의 법적 쟁점과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검토 -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와 객관적 해석의 원칙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27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_____,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수동화의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금융법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금융법학회, 2017.
- _____, “인슈어테크와 보험법적 쟁점”, 「보험법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보험법학회, 2020.
- 박세민, “산출방법서 내용의 약관 편입 여부와 설명의무에 관하여 -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관한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 「보험학회지」 제119집, 한국보험학회, 2019.
- 박은경,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 연구”, 「금융법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 2018.
- 박준선,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에 관한 법적 문제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 216731, 2016다216748 판결 -”,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7.
- 백영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개선 법안 검토”, 「KiRi리포트」 제417권, 보험연구원, 2017.
- 서종희, “단기소멸시효와 진행 개시 장애 사유 - Boissonade 민법 초안 및 일본 舊 민법으로 부터의 시사 -”, 「일감법학」 제46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 양승규, “재해사망보험의 자살약관과 금융감독원의 책임”, 「보험법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보험법학회, 2018.
- 유주선,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시효기간의 정지 - 독일 보험계약법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제21권 제4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1.

- _____, “보험계약법상 최근 쟁점 - 2020년 의원 입법(안)을 중심으로 -”, 「일감법학」 제48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 윤성승·김성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연장”, 「비교사법」 제25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8.
- 이경재, “자살보험금 청구권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30권 제2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 이훈중, “보험금청구권과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4집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14.
- _____, “상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6집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16.
- _____, “민사시효와 상사시효 구별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제59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0.
- 장경환, “단기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액 계산에서 단기보험금 총당액의 차감에 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 「보험법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보험법학회, 2018.
- 장덕조,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금융법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금융법학회, 2016.
- _____, “즉시연금 사건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금융법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금융법학회, 2018.
- 정찬형, “최근 한국 상법(보험 편)의 개정내용에 관한 연구”, 「금융법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 2017.
- 최병규, “자살의 경우 면책 기간 경과 후의 부채과 예문해석에 관한 고찰”, 「경영법률」 제25권 제4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5.
- _____, “면책 기간 후 자살과 지급 보험금의 성격에 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기업법학회, 2016.
- 한창희, “보험약관의 해석원칙과 효력 - 자살재해사망특약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27권 제3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홍성균,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객관적 체계의 원화 - 대법원 판례의 ‘객관적 인식 가능성’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제25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8.
- 황현아,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행정제재의 법적 근거와 한계 - 재해사망보험금 및 즉시연금 사건에 대한 행정제재의 타당성 -”, 「금융법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금융법학회, 2018.

금융감독원, “보험상품 변경권고”, 보험상품감리2팀-10(2020. 1. 2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글로벌 핀테크 10대 트렌드 및 시사점”, 핀테크혁신실(2019. 6. 7.).

_____, “2019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 민원분쟁조사실(2020. 4. 20.).

_____, “2020년 1~3분기 금융민원 동향”, 민원분쟁조사실(2020. 12. 10.).

[http://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8-518-2251?_lrTS=20170816051628912& transition
Type= 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bhcp=1](http://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8-518-2251?_lrTS=20170816051628912&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bhcp=1)(2021. 3. 23. 방문)

<Abstract>

A Study o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Insurance Claim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Kim, Jun Yuop*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insurance claims is based on civil and commercial law. The provisions of civil and commercial laws have generally remained unchanged over the past 60 years. Consequently, it has become impossible to satisfy the demands of insurance consumers concerning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insurance claims. Several bills have been submitted to improve this in response to suicide insurance cases that have drawn attention to the disjunction between the legal system and actual practice. However, the conventional system remains valid as it is not possible to improv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insurance claims policy unless the entire civil law is revised.

As insurance consumers' rights have increased and given that the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makes it less onerous to utilize insurance credit information, disputes between consumers and companies are becoming more frequent. Several measures have been considered to solve this issue. First, a 2013 amendment to the Civil Act of the Ministry of Justice, which adopted the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was considered for insurance policies. However, an amendment proposing to abolish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while switching from an objective to a subjective system with a statute of limitations is unlikely to be reflected in the current legal system. Nex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considered revising the requirements for retrospective orders in order to apply the same

* National Credit Union Federation of Korea, Ph. D.

clauses to all applicable cases when the court delivers a judgment in which the interpretation of insurance policy is controvertible.

Abuse of retrospective orders could cause significant problems. However, if applied to cases with prominent limitations such as suicide insurance or pension cases, a retrospective order can be employed as a measure to compensate for the irrationality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Finally, amendments to the insurance policy specifying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and an active announcement about making claims before extinction would reduce damage to insurance consumers resulting from the extinction of a claim due to a lapse of time.

Key Words : expiration of an insurance claim, suicide insurance case, insurance credit information, dormant insurance, insurance policy

